총동문회칙 11-1-4

규정번호 11-1-4
제정일자 1978.1.24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5차 개정
관리부서 학생복지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명지전문대학 총동문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하며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 및 회보발간 사업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가. 모교를 졸업한 자
   나. 모교 특별과정 또는 평생교육원을 수료한 자
2. 준회원
   가. 모교에 재학 사실이 있는 자
3. 특별회원
   가. 모교에 2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
4. 명예회원
   가. 모교 역대학장
   나.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 자

제6조(회원의 권리 의무) 회원은 의결·선거·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지며, 또한 회비납부 및 집회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 약간 명
2. 회　장 : 1인
3. 부회장 : 부회장 약간 명을 두고 그 중 상임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4. 이　사 : 50명 내외
5. 감　사 : 2인
6. 사무국장 : 1인

제8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7.24.)

제9조(임원의 선임)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다만, 회장은 부회장 중 1명은 상임부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3.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사무국장은 이사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명예회장 및 고문)

1. 명예회장은 모교의 학장을 추대한다.
2. 고문은 본 회 회장을 역임한 동문 중 본 회와 모교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를 추대한다.

제11조(임원의 임무)

1.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회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4.7.24.)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7.24.)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3장　회　　의

제12조(회의)

1.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대의원회, 이사회, 상임집행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각 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13조(총회) 본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3년마다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총회는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대의원회로 위임한다.

제14조(총회 심의사항) 본 회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개선
3. 사업계획 승인
4.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제15조(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본 회의 임원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대의원회는 3년에 1회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회는 회장 또는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4. 대의원회의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대의원 선임과 자격) 본 회의 대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당연직 대의원 : 본 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2. 추천 대의원 : 졸업기별 총학생회장, 각 학과 동문회장, 지회 또는 분회장
3. 위촉 대의원 : 본 회 발전에 공헌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대의원 권한) 본 회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8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이사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의결은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9조(이사회의 심의사항) 본 회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2. 본 회의 기본방침 및 계획수립
3. 중요사업계획 및 집행방안
4. 회비 및 부담금 결정
5. 기타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20조(상임집행위원회)

1. 본 회의 상임집행위원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위임사항을 집행하고 본 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이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위촉하여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가. 기획이사 : 본 회 및 모교발전을 위한 기획에 관한 제반사항
   나. 조직이사 : 본 회의 회원명부 작성, 각급 조직을 위한 제반사무

다. 사업이사 : 본 회가 수행하는 전반적인 사업과 기금 조성을 위한 제반사업
라. 총무이사 : 본 회의 일반사항, 재정 및 경리, 타 부서에서 속하지 않는 사항
마. 문화홍보이사 : 회보발간 및 대내·외의 필요한 홍보, 섭외사무
바. 장학이사 : 장학기금조성 및 그에 따른 제반사무
사. 여성이사 : 여성동문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제4장 기 관

제21조(사무국) 본 회는 업무의 처리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4.7.24.)
1. 사무국에 국장 1인과 부국장, 직원 약간 명을 둔다.
2. 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부국장 및 직원은 회장단에서 정한다.

제5장 분 회

제22조(분회)
1. 분회는 학과별·지역별 ·직장별· 기타로서 5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분회가 설치되었을 때는 즉시 회원 및 임원명부를 첨부하여 본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23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연회비·찬조금·사업수익금·기타로 한다.
제24조(지출) 본 회의 재정지출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6조(감사보고) 감사는 본 회의 재정상황을 총회와 대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7조(개정) 이 회칙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칙은 1978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5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8조제2호, 제11조제2호·제3호, 제21조)